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지사항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마목에 따라, 2025년 7월 1일 이후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신청하는 사람은 「병역법」 제2조제1항제9호, 제16호 또는 제17호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 또는 복무하는 경우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조기재취업 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① ~ ③란은 청구인 본인의 인적사항 등을 적습니다.
 2. ④ ~ ⑪란은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 적습니다.
 3. ⑫ ~ ⑰란은 사업장에 고용된 것이 아니라 자영업 등을 하는 경우 적습니다.
 4. ⑦란은 실제 채용된 날을 적습니다.
 5. ⑧란은 전화, 문서, 문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최종 채용이 확정되었음을 통보받은 날을 적습니다.
 6. ⑨란에는 재취직 후 1년간 받은 상여금, 제수당 포함 월 평균 임금(세금 등 각종 공제 전의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65세 이상인 사람은 재취직 당시 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업주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한 월평균 임금액을 적습니다.
 7. ⑩란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직전에 최종 이직한 사업장의 이름을 적고, ⑪란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인이 재취직한 사업장과 ⑩란에 작성한 사업장의 관계 중 해당하는 란에 표시합니다.
 8. ⑮란은 실제 사업을 개시한 “개업 연월일”을 적습니다.
 9.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예시
 - 임대차계약서, 과세 증명자료(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전표 등), 보수명세서(보험설계사 등 노무제공자의 경우)
- ※ 65세 이상인 사람 중 65세 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사람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완화된 지급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2호 후단에 따른 지급제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처리절차

